

의안번호	제 74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4년 11월 4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1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제16대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고자 별표를 개정함

- 1) 별정직·정무직 책정기준 조정: 0.1% 이내 → 0.2% 이내(안 별표 1)
- 2)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(안 별표 2)
- 3) 일반직 5급 이하 총정원 $\Delta 3$ →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 +3(안 별표 3)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(2014. 9. 26. ~ 2014. 10. 16.):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,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.8% 이상	0.2% 이내

비고: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.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6.4% 이상	0.5% 이내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3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 이내	70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 이하
비 율	70% 이내	30% 이상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45	-		
정무직 계	1	1		
교육감	1	1		
일반직 계	2,898	-		
3급	1	1		
3·4급	4	4		
4급	19	18	1	
5급 이하 소계	2,861	-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
연구직 계	12	-		
연구사 소계	12	-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-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3	22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98	-		
별정직 계	3	-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35%;">일반직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별정직·정무직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99.9%이상</td> <td>0.1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: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4급이상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5급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6급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7급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8·9급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전문경력관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1.1%이내</td> <td>5%이내</td> <td>23%이내</td> <td>34%이내</td> <td>36.4%이상</td> <td>0.5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2. 연구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연구관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연구사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/tr> </table> <p>3. 교육전문직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35%;">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30%이내</td> <td>70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<신 설></p>	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	비 율	99.9%이상	0.1%이내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전문경력관	비 율	1.1%이내	5%이내	23%이내	34%이내	36.4%이상	0.5%이내	구 분	연구관	연구사	비 율	-	100%	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	비 율	30%이내	70%이상	<p>[별표 1]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35%;">일반직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별정직·정무직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99.8% 이상</td> <td>0.2% 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: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35%;">5급 상당 이상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6급 상당 이하</td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70% 이내</td> <td>3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직급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관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총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본청 (직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</td> <td>3,145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/td> <td>2,901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</td> <td>4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/td> <td>19</td> <td>18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</td> <td>2,864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</td> <td>13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</td> <td>12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 소계</td> <td></td> <td>12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 <td></td> <td>231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</td> <td>33</td> <td>22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</td> <td>198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</td> <td>3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</td> <td>3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	비 율	99.8% 이상	0.2% 이내	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 이하	비 율	70% 이내	30% 이상	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총계		3,145	-			정무직 계		1	1			교육감		1	1			일반직 계		2,901	-			3급		1	1			3·4급		4	4			4급		19	18	1		5급 이하 소계		2,864	-			전문경력관 소계		13	-			연구직 계		12	-			연구사 소계		12	-			교육전문직원 계		231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	33	22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	198	-			별정직 계		3	-			5급 상당 이하 소계		3	-		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99.9%이상	0.1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전문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.1%이내	5%이내	23%이내	34%이내	36.4%이상	0.5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연구관	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-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30%이내	70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99.8% 이상	0.2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70% 이내	3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	3,14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	2,90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	19	18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	2,86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	1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	12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	231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	33	22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	198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	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4.4.8.] [법률 제12213호, 2014.1.7., 일부개정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
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
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
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
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
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
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
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
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
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
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
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
의 인력

제16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·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, 그 수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5.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
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40호, 2013.12.30., 타법개정]

제12조(면직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(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,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,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.